

심사규정

- 접수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토의하여 선임한다.
심사위원 선정은 2인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결과가 불가로 판정된 원고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할 수 있다.
- 심사 의뢰시 원고와 함께 학회에서 정한 심사의뢰서(판정서)를 함께 우송한다.
- 심사기간은 3주 이내로 하고, 늦어질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.
- 심사위원이 동의할 시에는 심사위원을 저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.
- 채택된 원고는 수정본 제출시 수정본이 입력된 디스켓(한글)을 제출해야 한다.
- 편집위원회는 내용의 뜻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투고규정에 맞도록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.
- 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그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.
- 인쇄가 끝난 원고는 저자의 요청이 없을 시는 반송하지 않는다.
- 편집위원회의 게재승인이나 위원장의 게재승인이 확정된 날짜를 게재승인 일로 확정한다.
- 저자의 요구시 게재승인된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위원장 명의로 발행해 줄 수 있다.